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244
----------	-----

제출년월 : 2024년 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4년 하반기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아름드리 어린이집 (조현희)	장월로 160 (장위3동)	개 인 (조현희)	45/36	2019.08.01. ~ 2024.07.31.
2	푸른샘 어린이집 (우정옥)	장위로19길 35 (장위1동)	개 인 (우정옥)	65/63	
3	북악 어린이집 (김선옥)	솔샘로6마길 5 (정릉3동)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박근중)	57/35	2019.09.01. ~ 2024.08.31.
4	새날 어린이집 (이영선)	종암로25길 29 (종암동)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박근중)	43/35	
5	석관 어린이집 (김진애)	화랑로40길 27 (석관동)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박근중)	44/24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6	솔샘 어린이집 (양승임)	보국문로16가길 82 (정릉4동)	사회복지법인 백강복지재단 (황연옥)	72/64	
7	웅지 어린이집 (임영미)	길음로9길 113 (길음1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제일교회 (정주근)	87/58	
8	장위1동 어린이집 (박선화)	월계로32길 15 (장위1동)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박근종)	39/27	
9	그린나래 어린이집 (권현정)	한천로713 (장위3동)	개 인 (권현정)	45/36	2019.11.01. ~ 2024.10.31.
10	장위3동 어린이집 (홍효의)	돌곶이로32길 43 (장위3동)	개 인 (홍효의)	120/107	2020.01.01. ~ 2024.12.31.
11	한빛 어린이집 (박은진)	성북로 37 (성북동)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이종명)	62/46	

- 1)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 2) 수탁기관 선정 : 2024년 제3차,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

나. 위탁 사업의 범위

-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채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